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1. 7 선고 2024가단1042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변론 종결2024. 9. 12.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3. 3. 29.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B은 2020. 12. 15. C, D과 사이에 포항시 북구 E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86,39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6.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라 한다).

다. B은 2021. 3. 25. 포항시 북구 F 토지를 담보로 G조합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100,000,000원을 수표 10매로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3. 3. 29. 위 수표 중 5매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B은 2021. 4. 7. 위 서정리 629 토지를 매도하였다.

바.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24. 3. 11.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양도소득세	2021. 1. 31.	2021. 3. 31.	2021. 7. 13.	175,499,700	218,976,750
양도소득세	2021. 1. 31.	2021. 3. 31.	2021. 9. 9.	175,499,700	216,468,390
합계	350,999,400	435,435,140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1. 6.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1. 31.에 성립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B이 2023. 3. 2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B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2023. 3. 29.경 피고에 대한 5,000만 원 지급 행위는 피고가 일상가사를 벗어나 무직인 B 대신 B의 대출이자와 자녀 2명의 양육비, B 모친의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였던 점,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3억 4,000여 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포항시 북구 F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자마자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토지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B 간에 혼인으로 인한 부부공동생활과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B 사이에 2023. 3. 29.경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권순향